



---

#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

---

# 목 차

I. 제도개요 .....	3
II. 추진절차 .....	5
III. 상표사용 승인 및 관리 지침 .....	6
IV. 별지서식 .....	10

#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

## 1 제도개요

### 1) 개념

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·수·축·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가공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유네스코 인지도 + 생물권보전지역 청정성 ⇒ 상품경쟁력 강화

### 2) 추진배경

-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며,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브랜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.(독일 뮌헨지역 등)
- 로고 개발·활용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자원의 브랜드화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의 필수전략임.

### 3) 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 (심벌마크의 활용)

### 4) 추진방향

- 참여업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가치 정립
- 국가 인증(유기농인증, 무농약인증 등)이나 도 인증(J마크 등)을 취득한 개인, 단체, 법인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승인으로 인한 부담 경감

## 5) 브랜드 개요

### ○ 브랜드 아이덴티티(BI)

-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념을 지향하고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친환경·자연친화 생산품

### ○ 브랜드 비전

-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전이 선순환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체제 구축

### ○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



#### <의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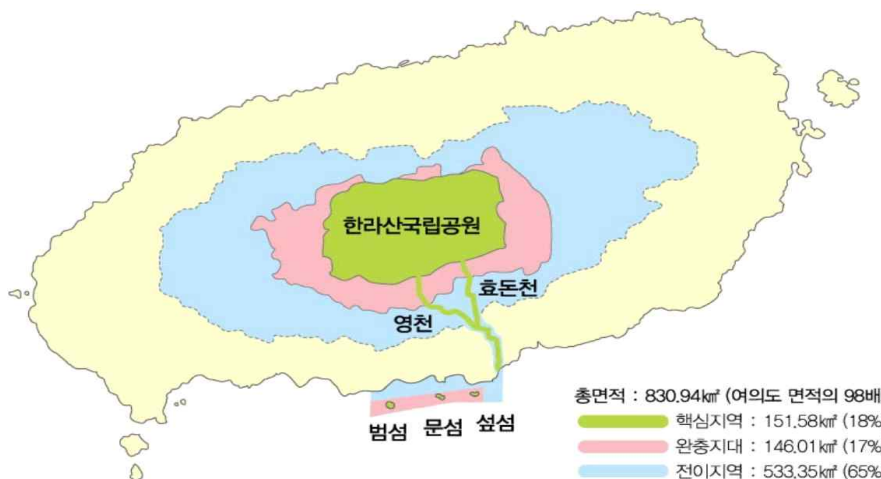
- 타원형 : 지구와 제주도 상징
- 생태계, 하천, 바다, 한라산 상징
- 글씨체 : 바람과 파도에 깎인 현무암

## 6) 적용범위

### ○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핵심·완충·전이지역

### ○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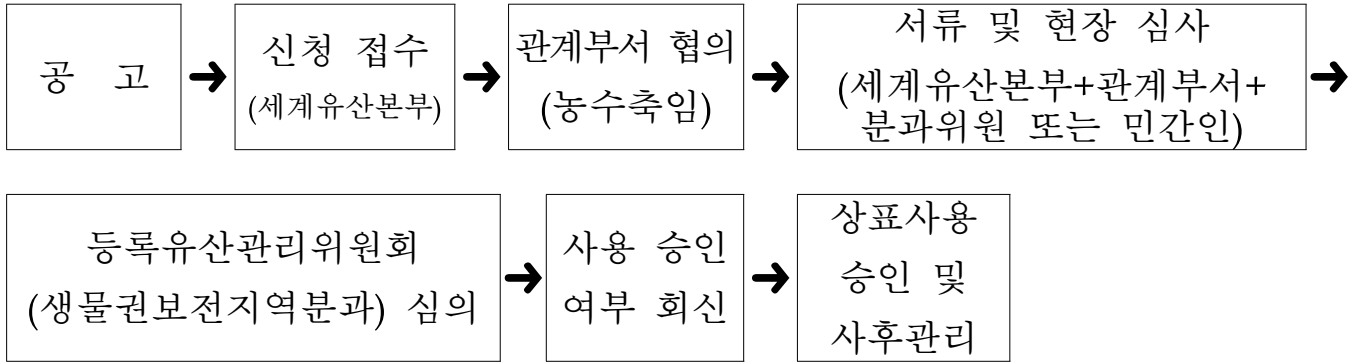
- 핵심지역 : 한라산국립공원지역, 영천·효돈천, 문섬·범섬·섬섬
- 완충지역 :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국유림,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일부
- 전이지역 : 중산간 지역(해발 200m이상), 영천·효돈천 주변 500m이내, 서귀포해양도립공원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양



[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구역]

## 2 추진절차

### 1) 상표 사용 승인 절차



### 2) 세부 진행 절차

#### ○ 공고 및 신청

- 공고시기 : 매년 3월, 9월(반기1회)
- 신청방법 :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및 증빙서류를 세계자연유산 관리단으로 제출

#### ○ 서류 및 현장 심사

- 서류심사 : 서류상 자격요건, 인증취득 여부 검토
- 현장심사 : 서류상 내용 일치 여부, 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토

#### ○ 사용승인 심의

- 심의주체 :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등록유산 관리위원회 생물권 보전지역 분과위원회
- 심의방법 :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작성한 사전 심사보고서에 의한 승인여부 심의(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류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관련 부서, 심의의원 또는 민간인과 합동심사 할 수 있다.)

#### ○ 사용승인 통보

- 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승인대상자에게 상표사용승인허가서(별지 제2호서식) 교부 및 인증현판 지급

### 3 상표사용 승인 및 관리 지침

#### 1) 승인 대상

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(핵심지역, 완충지역, 전이지역) 내에서 생산되는 농·수·축·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이를 가공한 제품

#### 2) 승인 신청 대상자

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개인, 단체, 법인

#### 3) 승인 기준

- 생물권보전지역내 생산여부 및 기존 정부 친환경인증, 정부 품질인증, 정부 안전관리인증, 제주도 품질인증 취득 여부 등 [별표 1. 승인가준표]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#### 4) 승인 기간

- 승인기간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매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사용 연장하고자 할 경우 사용 연장 신청서(별지 제4호서식)를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5) 승인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

- 세계유산본부는 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당초 신청내용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(필요시 관계부서 합동)

#### 6) 변경신청

- 변경신청 대상 : 승인품목, 생산지, 친환경인증 자격 득실 등 주요 변경사항 (이 경우 변경내용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)
- 변경신청 방법
  -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표사용 승인변경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변경신청 승인

- 세계유산본부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(필요시 현장방문)

7) 지위승계

-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(이하 '상표사용자')가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지위승계 신청서(별지 제6호)를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8) 승인취소

-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
  - 승인 당시의 승인기준을 상실한 경우
  - 전업·폐업 등으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(일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신고서(별지 제7호)를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)
  -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·보완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  - 그 외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(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)

9) 비용 부담

- 스티커 제작·인쇄, 포장재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.

10) 상표의 사용

- 상표는 승인품목에 한해 제품 포장재나 홍보물(전단지, 포스터, 홈페이지 등)에만 사용할 수 있다.
- 상표 사용권리를 타인(사)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11) 기타사항

- 상표사용자는 홍보에 필요한 정보 또는 물품제공 등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승인품목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유지,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- 상표는 포장재나 용기의 색상·크기·모양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.
- 세계유산본부는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판매실적, 설문조사, 방문조사 등을 상표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자료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## 4 붙임

- 별표 1. 승인가준표
- 별지 제1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
- 별지 제2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 허가서
- 별지 제3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고서
- 별지 제4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기간 연장 신고서
- 별지 제5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 지위승계 신고서
- 별지 제6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자 휴업신고서
- 별지 제7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대장



**【별표1. 승인기준표】**


대상	승인기준
농임산물	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1.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유기농’ 인증을 취득한 자 2.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무농약’ 인증을 취득한 자 3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‘농산물우수관리인증(GAP)’ 을 취득한 자 4.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득한 자
축산물	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. 1.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유기축산물’ 인증을 취득한 자 2.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무항생제축산물’ 인증을 취득한 자 3.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득한 자 4. 벌꿀인 경우 최근 2년간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생산규모가 50군 이상 인자.
수산물	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1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‘친환경수산물’ 인증을 취득한 자 2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‘수산물품질인증’ 을 취득한 자 3.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(J마크) 사용허가를 득한 자
천연자원	대상품목 : 고사리 등 산나물류, 조릿대, 야생버섯, 약초류, 먹는샘물 천연자원을 합법적으로 채취 또는 수매하여 판매하는 자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 1. 세척·포장·유통과정에서 오염 요인이 없어야 한다. 2.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. 3. 세척용수는 「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4. 포장 등 작업구역과 저장장소, 수송수단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가공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생물권보전지역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농수축임산물 및 천연자원을 주원료로 하여야 함. (주원료는 개별식품의 주용도,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이나 제품과 구별,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.)</li> <li>· 비인증 원료와 혼합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비인증 원료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.</li> <li>· 제조과정 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수는 「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li> <li>· 식품위생법, 농수산물품질관리법, 식품산업진흥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.</li> </ul>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

신청인	성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번호)		
	법인명(작목반)		참여농가수		
	주소		전화번호	Tel. HP.	
	전자메일	@	팩스번호		
생산현황	사업장소재지 (지번)				
	품목명				
	재배면적(ha) 사육규모				
	연간생산계획 (톤, 두수)				
인증취득현황	인증명	인증기관	인증품목	재배면적(m <sup>2</sup> )	인증취득기간
<p>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신청인]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</p>					
<p>[첨부서류]</p> <p>1. 인증서 사본(해당자에 한한다) 1부</p> <p>2. 정기검사 증명서(해당자에 한한다) 1부</p> <p>3. 가공품인 경우 :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, 제조공정상황개요서,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(해당자에 한한다)</p>					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		<p>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 허가서</p>	
<p>허가번호</p>			
<p>사 용 권 자</p>	<p>성명 또는 대표자</p>		<p>주민등록번호</p>
	<p>법인 또는 작목반</p>		
	<p>주 소</p>	<p>(전화)</p>	
<p>허 가 내 용</p>	<p>대 상 품 목</p>		
	<p>허 가 기 간</p>	<p>년 월 일부터</p>	<p>년 월 일까지</p>
<p>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직인</span></p>			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고서

신청인	성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번호)	
	법인명(작목반)		참여농가수	
	주 소		전 화 번 호	Tel. HP.
	전 자 메 일	@	팩 스 번 호	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		
<p>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 승인사항 변경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신청인] (서명 또는 날인)</p>				
<p>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</p>				
<p>[첨부서류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인증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한다)</li><li>2. 정기검사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한다)</li><li>3. 가공품인 경우 :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, 제조공정상황개요서,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한다)</li></ol>				

【별지 제4호서식】

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기간 연장 신고서

신 청 인	성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번호)		
	법인명(작목반)		참여농가수		
	주 소		전 화 번 호	Tel. HP.	
	전 자 메 일	@	팩 스 번 호		
허 가 현 황	허 가 번 호				
	품 목 명				
	허 가 기 간				
인 증 취 득 현 황	인증명	인증기관	인증품목	재배면적	인증취득 기간
<p>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승인 연장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신청인]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</p>					
<p>[첨부서류]</p> <p>1. 인증서 사본(해당자에 한한다) 1부</p> <p>2. 정기검사 증명서(해당자에 한한다)</p> <p>3. 가공품인 경우 :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, 제조공정상황개요서,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(해당자에 한한다)</p>					



【별지 제6호서식】

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사용자 휴업신고서

기본 정보	성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번호)	
	법인명(작목반)		참여농가수	
	주 소		전 화 번 호	Tel. HP.
	전 자 메 일	@	팩 스 번 호	
휴업기간	부터 까지			
휴업사유				
<p>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자 휴업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신청인]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</p>				
<p>[첨부서류] 없음</p>				

【별지 제7호서식】

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대장

일련 번호	허가 번호	사 용 권 자				내 용				비 고
		성 명	주민등록 번호	법인또는 작목반명	주 소 (전화번호)	대상 품목	승인 사유	승인 물량 (톤)	사용 기간	

※ 허가번호 부여방법 : (최초허가년도) - (월) - (허가 일련번호)